

1. 개정 이유

가.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증진·질병예방 및 장애특성별·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제공을 위한 **장애인건강검진센터**를 신설하고 센터 운영인력 증원을 위해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개정

나.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 및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국립재활원 4급 공무원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) 상한을 **17명에서 19명으로 개정**하고,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및 일반직 계를 **345명에서 357명**으로 개정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계를 **309명에서 321명**으로 개정 (제36조제9항 개정 및 별표 9)

나. 알기쉬운 용어 개정을 위해 “지불·정산”을 “지급·정산”으로, “지불체계”를 “지급체계”로, “비용지불제도”를 “비용지급제도”로, “지불제도”를 “지급제도”로 개정 (제7조제15항제24호, 제8조제14항제15호, 제12조제4항제7호·8호, 제12조제5항제1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1. 3. . ~ 3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5항제24호 중 “지불·정산”을 “지급·정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18항제10호 중 “제고인력”을 “제공인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4항제15호 중 “지불체계”를 “지급체계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제7호 중 “지불체계”를 “지급체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

중 “비용지불제도”를 “비용지급제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3호 중

“지불제도”를 “지급제도”로 한다.

제36조제9항 후단 중 “17명”을 “1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9 중 총계 “345”를 “357”로 하고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09”를 “321”로

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7조(사회복지정책실) ① ~ ⑭ (생략) ⑮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23. (생략) 24. 사회서비스 이용권 <u>지불·정산</u> 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5. ~ 32. (생략) ⑯·⑰ (생략) ⑱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9. (생략) 10. 사회서비스 <u>제고인력</u> 양성에 관한 사항	제7조(사회복지정책실) ① ~ ⑭ (현행과 같음) ⑮ ----- -----. 1. ~ 23. (현행과 같음) 24. ----- <u>지급·정산</u> ----- 25. ~ 32. (현행과 같음) ⑯·⑰ (현행과 같음) ⑱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<u>제공인력</u> ----- -----
제8조(인구정책실) ① ~ ⑬ (생략) ⑭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4. (생략) 15. 장기요양급여의 청구, 심사 및 <u>지불체계</u> 에 관한 사항 16. ~ 21. (생략) ⑮ ~ ⑲ (생략)	제8조(인구정책실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 ⑭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----- -- <u>지급체계</u> ----- 16. ~ 21. (현행과 같음) ⑮ ~ ⑲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건강보험정책국) ① ~ ③	제12조(건강보험정책국) ① ~ ③
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<u>지불</u> <u>체계</u> 의 수립에 관한 사항	7. ----- <u>지급</u> <u>체계</u> -----
8. 건강보험요양급여 <u>비용지불</u> <u>제도</u> 의 운영 및 평가	8. ----- <u>비용지급</u> <u>제도</u> -----
9. · 10. (생 략)	9. · 10. (현행과 같음)
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.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 제의 <u>지불제도</u> 운영에 관한 사항	13. ----- -- <u>지급제도</u> ----- --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⑧ (생 략)	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17</u> <u>명</u> 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은 4급 공무원 정원(3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	⑨ ----- -----. ----- ----- <u>19</u> <u>명</u> 을----- ----- ----- -----

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	-----
5급 공무원 정원(4급 또는 5급	-----
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	-----
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	-----.
⑩ (생 략)	⑩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9]

국립재활원 공무원정원표(제36조제9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345</u>	• <u>357</u>	+12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309</u>	<u>321</u>	+12
•	•	•	